[별표 2]

징계양정기준(제40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공금 횡령·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2.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3.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4.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등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견책
5. 음주운전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6.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